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93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4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6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 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Ⅲ. 검토의견

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파독근로자’라 함)에게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 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u><후단 신설></u>	제2조(지원대상) ----- -----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u>범위</u>,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u>생활지원금의 지원</u> ② ----- -----<u>범위</u>, <u>금액</u>-----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파독근로자에게 ①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②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실시, ③파독근로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 국가가 파독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가 파독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대상인 파독근로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보유나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모든 파독 근로자에게 국가가 직접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강화하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당초 제정안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나¹⁾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점을²⁾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가의 생활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범죄피해자,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³⁾ 파독근로자,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파독근로자까지 광범위하게 이들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 근로자(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등)⁴⁾ 대하여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파독기간이 종료된 이후 파독근로자의 40% 정도만 귀국하고, 나머지는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기타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⁵⁾ 이들의 생존여부나 국내거주 여부 등 기초적인 자료가 미비하므로⁶⁾ 파독근로자의 생활 및 거주환경 등

1)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0398,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제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금액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20. 5.11.) 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결되었음

3) 참고1. 생활지원금 관련 유사 입법례

4) 해외진출 근로자(한국노동통계연감, 1976) ① 베트남 25,287명('65~'75년), ② 일본 6,573명('65~'75년), ③ 중동 약 86만명('76년~ '90년대 중반)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8), p. 218.

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재정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되나, 대상자의 생존여부, 국내거주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범위 및 지급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파독 광부·간호사로 대한민국 거주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파독광부간호사(재외동포 등)는 일반적으로 해당 거주국의 관련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이기에 재외동포에 관한 입법사례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 지원 등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 공헌·희생 피해자 등에 한하여 외국국적 동포를 개별지원하고 있음을⁷⁾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재외동포청은 개정안이 대하여 외국국적 동포에게 복지급여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기에 역사적 특수동포 및 유사 해외 파견근로 동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파독근로 동포가 외국국적이라도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사하게 생활지원을 받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참고2. 재외동포 관련 입법 사례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1

생활지원금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생계급여(제8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지원
국가 유공자법	• 생활조정수당(제14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손실 복구 지원 등(제7조) - 범죄피해자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 시(「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세월호 피해 지원법	• 생활지원금 등(제23조) -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인 생활지원금
5·18 보상법	• 생활지원금(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지원금(제22조)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부마항쟁 보상법	• 생활지원금(제22조) -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위안부 피해자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2

재외동포 관련 입법 사례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영주권 취득한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정부수립 전에 국외 이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 「사할린동포법」

사할린동포 피해 구제, 그 동반가족의 영구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등

- 「고려인동포법」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과 생활안정 지원 등 → **관련단체** 지원